

# 제조물책임(PL)법 시행

## 4년을 맞이하여



글 | 유희동  
방재시험연구원 방재설비부장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4년이 경과한 제조물책임(PL)법.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반면 기업경영 활동에 위축을 가져다 준 것도 사실이었다.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되었는지 알아본다.

## 1. 머리말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제도는 1962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후 발달되어 1965년 EC(유럽연합)가 제조물책임 지침을 제정한 후 유럽 각국이 이를 채택하였고, 일본은 20여 년의 논의과정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도 수년간 논의과정을 거쳐 2000년 1월 제조물책임(PL)법이 공포된 후 2년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벌써 4년이 경과하였다. 시행 당시에는 소비자의 피해배상 청구가 쉬워지고 제조물의 안전성과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반면, 제조업체는 제조원가의 상승, 신제품 개발의 지연, 기업 이미지의 실추, 고액의 손해배상 등으로 인하여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에 대한 우려도 많았다. 이에 4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제도가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있고 그 동안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 2. 제조물책임(PL)법이란?

PL법은 소비자 또는 제3자가 제조업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PL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와 이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였으나, PL법 시행 후에는 손해를 입은 자가 제조물의 결함(설계결함, 제조결함, 경고결함) 존재와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즉, 과실입증에서 결함입증으로 바뀜에 따라 분쟁해결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재판상은 물론 재판 외의 중재·조정기구에서도 분쟁해결이 촉진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의 확대사고(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닌 품질사고(제조물 자체의 손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PL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제조물의 결함이란

- '제조상의 결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제조·가공상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임.
- '설계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했다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일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임.
-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임.

### 3. PL사고율의 증가

2004년 초 정부에서 발표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르면 소비자안전 강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 도입, 정부 조달품목의 PL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등 어느 때보다도 소비자 중심의 시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PL사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실제 PL사고율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PL 단체보험 사고 접수현황에 따르면, PL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2002년 PL사고는 110건에 불과하였지만 1년 후인 2003년에는 319건, 2004년에는 388건, 2005년에는 400건 이상 발생하여 2002년도에 비하면 무려 36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일도 PL법이 시행된 후에는 PL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달라져 피해청구를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제품 PL상담센터에 따르면 2004년도 국내 전자제품의 PL사고율은 9%로 일본의 PL사고율 1% 미만 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PL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4. 기업의 사후대책 저조

PL 관련 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그 규모도 대형



화, 고액화되는 추세이나 기업의 대응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PL보험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소비자 위주로 되어 있어 PL보험의 조기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PL보험 가입 대상 업체 약 126만 개 중 실제 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약 1만 7천개로 PL보험 가입율이 1.4%에 불과한 것은 중소기업의 제조물배상책임에 대한 사후대책이

제조업체에게는 손해배상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압박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제조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인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조업체가 PL사고 대응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PL사고 대응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보험회사의 보상조직을 통해 효과적으로 PL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흡한 것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평균 보험금 지급 액도 2002년 700만원, 2003년 600만원, 2004년 상반기 850만원 등으로 높아졌으며, 2003년도 배상규모도 12억 4천만원에 달해 점차 고액화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최근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여 모 일간지에 게재된 자료를 인용하면 PL보험이 처음 도입된 2002 회계연도의 수입보험료는 397억원, 2003회계연도에는 461억원, 2004회계연도에는 643억원, 2005회계연도 12월까지 717억원으로 연간 수입보험료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2005년 12월말 현재 손해보험회사에 가입된 PL보험 계약건수는 약 1만 7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 제조업을 중심으로 PL사고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PL 대응을 위해 제조업체의 설계, 제조,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이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집단소송이나 소액의 PL사고 발생시에도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의 실례를 들면 다국적 제약회사인 미국의 '머크(Merck)' 사는 미국 텍사스주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관절염 진통제 바이옥스(Vioxx)를 복용한 뒤 사망한 유족에게 2억 5,3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머크사는 바이옥스를 장기 복용하면 심

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2배 가량 증가한다는 임상 실험결과를 수용해 2004년 9월 바이옥스 판매를 중단했지만, 2004년 말까지 전 세계 2천여 만 명이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소송에 따른 배상금이 최고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PL보험은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입은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의무가입 대상은 아니나, 제품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분쟁을 피하고 소비자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체에게는 손해배상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자금압박 등의 부담을 경감시켜 제조업체로 하여금 정상적인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제조업체가 PL사고 대응에 대한 별도의 조직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PL사고 대응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보험회사의 보상조직을 통해 효과적으로 PL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응조직이 없는 기업, 특히 PL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게는 PL보험 가입이 곧 사후대책의 일환이므로 반드시 가입하여야 할 것이다.

## 5. 제품의 원가상승 주요 요인

소비자는 제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과거에는 교환 또는 환불로서 피해구제를 받았지만 지금은 PL과 관련된 소송이나 언론공개를 통한 거액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 피해와 관련이 없는 많은 소비자 또는 네티즌들이 해당 기업의 제품 불매운동

■ <표 1> 소방제품의 표시실태

제품명	표시 대상	제조사 표시		성능 표시		사용설명서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스프링클러용 신축배관	8	5	3	4	4	0	8
축광표시	4	3	1	0	4	0	4
위치표시등	7	1	6	0	7	0	7

이나 사이버테러를 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의 압력밥솥 폭발사건, 불량만두 사건, 휴대폰 배터리 폭발사건, 학교 급식 식중독 사건 등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제품회수 비용 및 소비자 신뢰도 저하에 따라 사업을 포기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소홀시 제조업체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무분별한 소송제기 또는 과대한 피해보상 요구 등은 PL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PL법의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악의적인 피해보상 요구로 인한 기업의 피해는 제품의 원가 상승으로 인하여 결국 소비자 자신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PL법이 시행되고 나서 많은 기업들이 제품의 안정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설계 단계에서의 검증시스템 강화, 공장설비 개선, 고객만족을 위한 서비스 확대 등의 투자비용 증가가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제품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덧붙여 고의적인 오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유도하여 과대한 보상을 요구할 경우 기업에서 지불하는 불필요한 피해보상금과 악의적 클레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한 비용 등으로 인하여 결국 제조원가가 상승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PL법 등 기업 관련 법률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윤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조직을

신설하거나 더욱 강화하고 있는 현실 또한 제품의 원가상승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6. 소방방재제품과 제조물책임

일반 공산품은 대부분 개인이나 가족 단위로 사용되는 반면 소방시설은 대부분 공용물품이다. 또한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에만 구입되어 설치된다. 대부분의 경우 이용자는 일반 국민이고 구입자는 건축주이며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시공업자인 경우가 많다. 특히 이용자는 제품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의 소방시설이 비상시에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용방법도 익숙하지 않다. 따라서 일반제품과 다르게 소방제품은 생산과 설치에서 관리까지 준수하여야 할 사항들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소방제품의 특성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방재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설비의 설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함에 따라 신체,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시 그 피해가 상당하므로 어느 제품보다도 제조물책임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소방방재제품은 누가 제조한 제품인지도 모르는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어 소방제품의 신뢰도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였던 소방제품 표본조사 결과를 보면 표시사항을 법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형식승인(검정) 대상 제



품이 아닌 것 중 사용량이 많은 3개 제품의 표시실태를 보면 3개의 표시를 완벽하게 한 제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으로 나타나 그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표 1 참조)

소방제품과 같은 것은 비용을 지불하는 건축주가 제품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공사업자나 감리자가 이를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불량 제품이 설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공사업자나 감리업자는 구매한 제품에 대해 철저한 검수를 실시하여 믿을 수 있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제품은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제조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공급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제조물책임 측면에서의 철저한 검사는 공사업자나 감리업자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 7. PL관련 정부기관의 대응 사례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PL 사고와 관련하여 재판할 경우 당사자인 소비자와 제조업자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여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제품분야별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재판 외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중립성·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에서는 가전제품 PL상담센터 등 업종별 단체(비영리법인 등)를 설립 및 운영토록 하고 있다. 현재 14개의 업종별 상담센터가 있으며, 실제 소송보다는 이와 같은 단체에서 중재에 의한 해결이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PL법 시행 등 최근 소방관련 법률분쟁의 증가에 대비하여 사법시험과 행정고시 출신자 10여 명을 소방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였고,

국내외 경제 환경상 대형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집단 식중독, 놀이시설 사고, 철도 사고, 새집증후군 등의 사고가 잠재되어 있어 기업의 생존권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PL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화재원인에 대한 과학적인 감식 능력을 높이고 PL법 시행에 따른 법적 분쟁에 대비한 증거능력 확보 등을 위해 화재전문조사팀을 신설하였다. 또한 광역시·도별 소방본부에도 화재조사담당(팀)을 신설하고 전국 162개 소방서에 화재조사계를 설치하였다. 또한 화재가 점차 대형화되고 방화 발생이 급증하면서 화재원인의 규명이 복잡해짐에 따라 과학적인 화재감식 능력 제고를 위해 중앙소방학교 내에 소방과학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8.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 추진

소비자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소비자보호법 개정과 소비자보호원의 관할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보호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는 것은 OECD 회원국들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노력하는 것과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하다. 2001년 결함정보보고의무제, 리콜권 고제, 긴급리콜명령제도와 제조물책임법을 도입하였고, 2005년도에 증권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약의적으로 손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한 채 가해행위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새로운 책임부과방법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부과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은 실 손해액의 2배부터 몇 만 배까지 달하는 경우가 있다.

PL법이 도입될 당시의 염려와 기대와는 달리 PL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제조물책임에 대한 소송은 생각했던 것 만큼 많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부 사회적 관심을 끌었던 몇 가지 소송 이외에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제조물책임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거나 또는 제조물과 관련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광범위한 것에 비하여 개개인의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므로, 개인이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 비용이 판결 금액보다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을 처음부터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에서는 단체소송 및 집단소송제도를 적극 도입토록 요구하고 있다.

PL법에서 제품의 결함 입증을 피해자가 입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발생한 사건을 보게 되면 사실상 제품의 결함 자체도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같은 것은 단순한 운전자의 과실로 치부하기에는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 누구도 기술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모순으로 인하여 일본의 PL법 개정안에는 결함의 추정에 관한 규정과 인과관계의 추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으며, 우리나라도 입증 책임을 더욱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1995년 PL법을 시행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고의적 제품 결함에 대한 강력한 제재(징벌적 배상금), 피해자에 대한 광범위한 구제(집단소송제) 등을 PL법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 9. 맺음말

국내외 경제 환경상 대형 집단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집단 식중독, 놀이시설 사고, 철도 사고, 새집증후군 등의 사고가 잠재되어 있어 기업의 생존권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PL보험의 가입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의 각종 지원시책이 필요하다.

PL법은 선진국 대부분이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고, EU에서는 역내 유통을 규제하는 일종의 무역장벽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있어, 우리도 PL대책에 대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아직은 PL에 대한 관심과 대응체제 등의 노력이 미진한 편이므로 정부공공기관,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PL 대상 기업들은 PL대응체제 구축을 당면한 과제로 설정하여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 □ 용어의 정의

- **하자보수(A/S, After Service)** : 상품에 하자가 발생되어 소비자의 불만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불만고객 개인의 제품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리콜(Recall)** : 일단 출하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하거나 안전문제가 예상될 경우 소비자의 요구 여부에 관계없이 문제가 된 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예방차원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 : 가해자의 고의 또는 그에 가까운 악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고액의 배상금을 가해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집단소송제도** : 같은 집단으로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이해관계가 밀접한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피해자 중에서 별도로 제외 신고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판결의 효력이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하는 집단구제(일괄 구제) 제도